KOSHA GUIDE

C - 06 - 2015

(2) 전동

- (가) 전동해머드릴
- (나) 그라인더 등

6.2 타일 철거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
(1) 준비작업

- (가) 자재 등 운반 시에는 작업수행 전 근로자 동선을 확보하고 운반통행로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한다.
- (나) 작업장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업 전 청소하는 등 정리 정돈을 실시한다.
- (다) 철거작업에 사용되는 수동 및 전동기계·기구에 대하여는 반입 전에 이상 유무 점검을 실시한다.

(2) 타일 철거작업

- (가) 철거작업 계획수립 시 철거 부위의 구조, 타일의 부착상태, 상·하 동시 작업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책임자는 조사결과에 따른 철거방법, 철거물의 처분계획, 철거작업용 기계·기구 등이 포함된 철거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(다) 철거작업 시에는 작업높이에 따른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, 발판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, 발판까지의 통행을 위하여 승강설비를 설치한다.
- (라) 바닥타일을 전동해머드릴로 철거할 경우에는 드릴이 바닥면에서 미끄러지거나 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적정 힘으로 드릴을 잡아야 한다.
- (마) 전동해머드릴 등 중량의 전동 공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통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작업 전 준비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바) 벽체타일을 철거할 경우에는 타일의 탈락으로 인한 낙하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